「금융위 옴부즈만 Kick-off 회의」 회의자료



옴부즈만 제도 운영방안

2016. 2. 26.

금 융 현 장 지 원 단

목 차

I. 추진배경 :	1
Ⅱ. 주요내용 :	2
Ⅲ. 향후계획	4

Ⅰ. 추진배경

1.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상시 점검 개선 시스템 구축

- □ 「금융규제 운영규정('16.1.4)」을 통해 행정지도·감독행정을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로 운영하는 책임성 확보장치^{*}를 마련
 - (금융행정지도)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(반드시 문서로) 요청하는 행위 ➡ 등록공개 의무화, 불이익 조치 금지
 - (감독행정)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이 법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(반드시 문서로) 제시하는 감독행위 ➡ <u>내부보고, 등록·공개 의무화</u>
- 이를 위해 금융위에 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규정

금융규제운영규정 제18조(옴부즈만) ① <u>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, 그 밖의 금융유관</u> <u>기관</u>이 금융회사등에 하는 **감독행정작용이나 금융행정지도, 그 밖의 금융규제**에 대한 ... **개선 및 시정을 건의**하도록 하기 위하여 **금융위원회에 옴부즈만을 둔다.**

- □ 금융당국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시각에서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 체계 구축이 필요
- 특히 금융회사의 실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되는 그림자규제^{*}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는 노력이 중요
 - * 지도공문, 구두지시, 협회 자율규제 등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비정형화된 규제

2. 현장수요 중심의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

- □ 금융민원은 소비자불만, 정책평가, 시장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에 활용 필요
 - ※ 영국은 금융음부즈만과 금융감독기관(FCA)이 협력하여 집단분쟁건수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실시
 - ➡ **민간의 전문성**을 바탕으로 **금융당국과 독립된 지위**에서
 -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준수여부를 상시 점검·개선하고,
 - **② 민원** 및 **금융소비자를 보호**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

Ⅱ. 주요 내용

- ★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와 금융소비자의 보호 양 측면에서 금융질서를 수호하는 가디언(Guardian) 역할 담당
- o 금융법령에 대한 **전문지식**,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**독립성** 등을 고려하여 **외부 추천**을 통해 옴부즈만을 **운영**

1. 옴부즈만 구성 및 역할

- □ (구성)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,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 임명
- 각 업권별 민간전문가 **7명 이내***로 구성되며 고충민원 등의 심의·의결 등을 위해 **분기별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**
 - * 위원장, 업권별 옴부즈만(은행·금투·보험·비은행·소비자), 간사로 구성
- □ (역할)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·정비하고 현장수요 중심의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
- 금융행정지도·감독행정의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개선권고·건의 및 의사표명
- ② 지도공문, 구두지시, 협회 자율규제 등 그림자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효력·준수·조치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
- ③ 민원 등 금융소비자^{*}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제도 및 금융 소비자보호제도에 피드백(의견수렴 채널로서의 옴부즈만)
 - * 금융소비자의 범위에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자금조달 등 금융 거래 과정상의 애로 해소 역할 병행
- ※ **옴부즈만**은 개별 사안의 처리 뿐만 아니라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프로세스 및 민원제도·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역할도 수행

2. 옴부즈만 운영 프로세스

[옴부즈만 운영프로세스]



- (고층민원 등 접수)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개선의 Two-Track 으로 접수
- (비공식 금융행정규제 개선) 금융규제민원포털, 현장점검, 협회를 통하여 고충민원 접수
- (민원·금융소비자보호) 현장메신저, 금융민원센터, 금융규제 민원포털, 일반 금융회사 민원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 발굴
- ② (안건선정 등) 음부즈만 실무협의회*가 음부즈만 회의의 회부 대상 안건을 선정하고 최종 개선권고등 결정안 제시
 - * 금융위(금융현장지원단장, 규제개혁법무담당관, 금융소비자과장), 금감원, 간사 옴부즈만으로 구성
- ③ (옴부즈만 회의) 최종 개선권고등 결정안에 대해 옴부즈만 회의 에서 채택여부 및 개선권고 결정*
 - * (예시) 행정지도 등록·공개, 제도개선 건의 및 의사표명 등
- ④ (개선권고등의 처리) 금융위, 금감원, 금융유관기관의 개선 권고등에 따른 조치사항 내용을 옴부즈만에게 보고

Ⅲ. 향후 계획(안)

- * 옴부즈만 출범후 향후 일정 및 업무계획 등을 협의·구체화
- □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우선 그림자규제 발굴· 정비를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실시
- '협회' 채널을 통해 '그림자규제 일괄해소'('16.2.1)의 후속조치 로서 금융회사 내규, 협회 자율규제 등에 숨은 규제 발굴·정비
 - * `16년 일괄해소시 효력·준수·제재여부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한 46건 및 `14년 일괄해소건(총660건) 中 협회 요청을 감안하여 명확히 하여 전파·관리

< 그림자규제의 발생·존속 원인 >

- 오래된 구두지시가 금융회사 내규 등으로 반영되어 가격·상품규제로 작용
- ② 폐지 또는 존속기간 만료되었거나 순수자율규제로 전환된 행정지도에 대한 인지·전파 미흡
- ❸ 포괄적인 행정지도로 인해 금융회사등이 규제범위 오해
- **4 법규에 기반영된 행정지도의 잔존**으로 인한 **중복규제**
- ➡ <u>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옴부즈만</u>이 그림자규제를 지속 발굴·정비하여 전파함으로써그림자규제의 효과적인 근절이 가능
- ② 금융회사의 고충민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
- 금융업권으로부터 독립되고 공정한 옴부즈만을 통해 민원· 소비자 제도 및 프로세스, 의견수렴채널 구축방안 마련
- 그간의 금융민원의 처리 및 정책 환류 절차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금융민원 활용방안을 마련
 - ※ (예시)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현장수요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구